

# 폐수배출 관리 규정

문서관리번호	DS-폐수-221201
담당자(부서)	임종만(정보사업부)

주식회사 다솜에스앤씨

### 제정 및 개정 이력

일자	사유
2022.12.01	최초 제정
2024.09.18	제4조(폐수배출시설) 내용 수정

(시행일) 본 지침은 등록된 제정 및 개정 일자 이후 즉시 시행한다.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(주)다솜에스앤씨(이하 회사)의 폐수배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 환경 보전에 노력하고자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전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,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며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.

제 3 조(용어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폐수(물환경보전법제 2 조 4 호)"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.
2. "하수(하수도법제 2 조 1 호)"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(이하 "오수"라 한다)과 건물·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·지하수를 말한다. 다만,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.
3. "수질오염물질(물환경보전법제 2 조 7 호)"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.
4. "폐수배출량(물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 13)"이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 (수돗물·공업용수·지하수·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)중 최종 방류구를 통해 나간 물의 양을 말한다.
5. "1 일 최대폐수량(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 4)"이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한 양을 말한다.
6. "공공폐수처리시설(물환경보전법제 2 조 17 호)"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 2 장 폐수배출 시설

제 4 조(폐수배출시설) ① 회사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6 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적용 및 분류하여 관리한다.

② 회사는 사업장의 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시설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와 폐수배출량을 파악하여야 하며, 이는 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[별표 2] 수질오염물질, [별표 3] 특정수질유해물질, [별표 4] 폐수배출시설을 따른다.

구분	폐수배출량	예외사항
<p>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*</p>	<p>1 일 최대 0.01 m<sup>3</sup> 이상 (10 ℓ)</p>	<p>① 출판·인쇄시설, 자동식 사진처리시설, X-Ray 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제품 제조시설(폐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폐수배출시설) ② 2) 금속광업시설과 82) 제 1 호부터 제 81 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[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.1 m<sup>3</sup> 이상{「수도법」 제 7 조에 따른 상수원보호 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(「팔당·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」(환경부 고시 제 2019-105 호, 2019. 6. 13. 발령·시행)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을 말함. 이하 같음)은 1 일 최대 폐수량이 0.2 m<sup>3</sup> 이상]일 경우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]</p>
<p>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</p>	<p>1 일 최대 0.1 m<sup>3</sup> 이상 (100 ℓ)</p>	<p>2) 금속광업시설 및 82) 그 밖의 폐수배출시설[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 m<sup>3</sup> 이상{「수도법」 제 7 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1 일 최대 폐수량이 2 m<sup>3</sup> 이상]일 경우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] ②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. - 1 일 최대 폐수량이 20 m<sup>3</sup> 이하로서 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「하수도법」 제 2 조제 9 호 및 제 13 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- 1 일 최대 폐수량이 20 m<sup>3</sup>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(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 12 조)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·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- 1 일 최대 폐수량이 10 m<sup>3</sup>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「하수도법 시행규칙」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,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·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</p>
<p>*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: -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원료(용수 포함, 이하 같음),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,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별표 13 의 2 에 따른 기준 이상 포함된 폐수(원폐수)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. - 다만,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「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」 별표 1 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. ** 1 일 최대폐수량 :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, 위탁처리·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,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</p>		

- 1) 두부 및 떡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「하수도법」 제 2 조제 9 호 및 제 13 호에 따른 공공·개인하수처리 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 및 떡 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 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.
- 2)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 되지 않는(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)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.

제 3 장 환경기술인 임명

제 5 조(환경기술인 임명) 회사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. 임명의 경우, 환경기술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(별표 1 참고).

[별표 1] 사업장 분류에 따른 환경관리인 자격요건

종별	구 분	환경관리인 자격기준
1	1일 폐수배출량이 2000m <sup>3</sup> 이상인 사업장	수질환경기사
2	1일 폐수배출량이 700m <sup>3</sup> 이상 2000m <sup>3</sup> 미만인 사업장	수질환경산업기사
3	1일 폐수배출량이 200m <sup>3</sup> 이상 700m <sup>3</sup> 미만인 사업장	수질환경산업기사, 환경기능사 또는 3년이상 관련분야 환경관련업무에 종사한자
4	일 폐수배출량이 50m <sup>3</sup> 이상 200m <sup>3</sup> 미만인 사업장	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가 당해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중에서 임명하는 자 1인 이상
5	상기 4종 사업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	
<p>1. 대기환경관리인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환경관리인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관리인을 겸임할 수 있다.</p> <p>2.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종 및 5종사업장은 3종사업장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. 다만,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 m<sup>3</sup>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		

## 제 4 장 폐수배출 절차

제 6 조(폐수처리) 폐수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발생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.
2. 폐수위탁은 제 41 조에 따라 위탁처리 할 수 있는 폐수로 한정한다.
3.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1 일 최대폐수량을 기준으로 5 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(간이측정자·눈금 등)를 부착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생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.
4.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, 출판·인쇄, 자동식사진처리, X-Ray 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,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18 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 센티미터, 세로 4 센티미터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은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'현상폐수'라고 적고, 정착액은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 '정착폐수'라고 적어야 한다. 다만, 소규모 자동식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
5.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·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폐수(위)수탁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6.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7.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, 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8. 매년 다음 해 1 월 10 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